2018년도 본청(1차)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기획감사실)

- 2018년도 본청(1차)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감사내용》

] 기 간 : 2018. 5. 14. ~ 5. 18. (5일간)

네 대상기관 : 주민복지과

집 감 사 반 : 기획감사실장 외 5명

집 감사범위: 2014. 11월부터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실태

●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등

●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13건

● 행정상 조치 : 13건(주의 8, 시정 5)

● 재정상 조치 : 회수 2건 4,022,130원 / 지급 2건 160,00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수범사례(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로 복지체감도 제고)

-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 및 인적안전망 구축 실적(2017년)
 - · 민간자원 발굴 : 245명 / 44개소 / 367,080천원
 - 인적안전망 구축 : 486명(복지이장 230명, 읍면보장협의체 138명, 실무분과 118명)
- 민간협력을 통한 취약가구 발굴 및 서비스연계 실적(2017년)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통한 취약가구 발굴 : 4회 / 667가구
 - 취약가구 현금 및 현물지원 : 5,363가구 / 348,250천원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	
<u></u> 합계	복지기획 1 노인복지 7 생활보장 4 희명자원1	13건	<u>행정상</u> 주의 8 시정 5	신분상	재정상 호수 2건 4022,130원 지급 2건 160,000원
1	복지기획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2		• 화장 장려금 지급 소홀	주의		
3		• 영동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부적정	주의		
4		•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주의		
5	노인복지	• ■■■ ★★★★ 운영비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주의		
6		• ★★★ ○○○○○○ ○○공사 조경수 하자관리 부적정	시정		
7		•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319,350원
8		•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3,702,780원
9		• 장애인 보장구 지급대상 사후관리 소홀	주의		
10	ᄱᅙᄔᅼᅐᅡ	• ▲▲▲▲▲ 음향기 교체사업 예산편성 및 물품관리 부적정	주의		
11	생활보장	• 세외수입(장애인전용구역주차 위반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시정		
12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지급 소홀	시정		지급2건 160,000원
13	희망복지	•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사를 위한 위원회 개최 소홀	주의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지 출 현 황】

회계 년도	사업명	통계목	적요	지급액(원)	거래처명
2015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유선료 지급(1월~12월)	105,600원 (8,800원/월*12개월)	(A) (O) (O) (O) (O) (O) (O) (O) (O) (O) (O
2016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유선료 지급(1월~12월)	105,600원 (8,800원/월*12개월)	"
2017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유선료 지급(1월~12월)	105,600원 (8,800원/월*12개월)	"
2018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유선료 지급(1월~4월)	35,200원 (8,800원/월*4개월)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 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기본경비 는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편성목 일반운영비(201)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201-02) 중 3. 시설장비유지비의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 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

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하고 있음.

《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

편 성 목	통	계	목		기본경비의 내용
201 일반운영비	사 무	관	리	비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일·숙직비(사업소, 읍·면·동)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범용S/W구입비
	공 공	운	영	비	·공공요금 및 제세

○ 그럼에도 주민복지과는 ⑥•⑥•⑥•⑥• 유선료 지급을 위한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화장 장려금 지급 소홀

【현황】

○ 화장 장려금 지급현황(2018. 2월~4월)

(단위 : 원)

	신청인			신청서 접수일	실제지급
성명	주소	생년 월일	사망자와 관계	(공문접수일)	일자
-	-	-	자	2.27	4.2
_	_	_	자	2.27	4.2
-	-	-	배우자	2.22	4.2
_	-	-	자	2.22	4.2
-	_	-	자	2.23	4.2
-	_	-	배우자	2.26	4.2
_	-	_	자	2.21	4.2
-	-	_	배우자	1.3	2.28
_	-	_	자	1.15	2.28

- 화장장려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동군 관내 묘지증 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음.
- 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연고자가 신청을 하면 영동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 O 상기 2018년 2월 및 4월 화장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 외 8명

의 경우 신청일로부터의 지급기한(20일)을 지나 지연 지급하였음.

【처분내용】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영동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부적정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노인·아동·심신 장애인·청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 례 제5조에 따르면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 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며, 위탁계약기간은 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5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

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동군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주민복지과는 영동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4.12.16.일 수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사)◎
 ◎◎◎◎★★★★★를 수탁기관으로 2015.1.1.부터 2019.12.31.까지 5년간 수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을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현황]

<2016년 수행기관 지정 및 위탁관리협약 현황>

수행기관명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사업량	비고	
18/128	협약내용		기간	VI H O	-1	
_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형, 취업창업형)	1,089,213	'16.2.1 ~12.31	540명	전담인력 3명지원	
	예산집행 및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12.01			
_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형, 취업창업형)	246,671	'16.2.1 ~12.31	120명	전담인력 1명지원	
	예산집행 및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12.31		16시면	

<2017년 수행기관 지정 및 위탁관리협약 현황>

수행기관명	대표자	사업기간	사 업 명 협약내용	사업량	비고	
			1 1 1 1 1			
_	_	2017.2.1.~ 2017.12.31.	2017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형 7)	7개사업 565명	2016년도 수행기관	
		2017.12.31.	예산집행 및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3038	_ 구영기관 	
_	_	2017.2.1.~ 2017.12.31.	2017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형 4, 취업창업형 1)	5개사업 130명	2016년도 수행기관	
		2017.12.01.	예산집행 및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1008	1 8,15	

<2018년 수행기관 지정 및 위탁관리협약 현황>

_							
	수행기관명	대표자	사업기간	사 업 명 협약내용	사업량	비고	
	_	_	2018.1.1.~	2018년도 노인일자리 및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형 7, 인력파견형 1)	8개사업	2017년도 수행기관	
	2018.12.31.		2010.12.31.	예산집행 및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767명	구엥기판	
	_	_	2018.1.1.~ 2018.12.31.	2018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형 4)	4개사업 120명	2017년도 수행기관	
	2018.1		2010.12.31.	예산집행 및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1208	_ 干성기원 	

【위법부당사항】

O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 본법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한노인회의 활동내용으로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는 노인복지관 업무 및 기능으로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노인건강 지원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예시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사회활동중 공익활동형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재능나눔활동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시장(취창업)형중 시장형사업단과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시니어인턴십과 고령자친화기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주민복지과는 노인일자리지원(보조)을 일자리사업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나 민간경상보조(307-02)로 예 산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 ★★★★와 ⑥⑥⑥⑥⑥⑥⑥⑥⑥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형, 취 업창업형)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위탁금(307-05)으로 예산을 부적 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 ★★★★ 운영비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현황】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정산보고서 제출일	정산검사일
2017년■■■■ ◎◎◎ ◎◎ ★★★★ 운영비	00000	2017.1.1.	2018.3.28.	2018.4.2

- 영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제1항의 사유(*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년 ■■■■■ ○○○○○○ ★★★★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자 ▲
 ▲▲▲▲ ▲▲▲▲▲(대표자 ○○○)는 운영비 보조금 정산시 영동
 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28일이나 기한을 도과하여 2018.3.28.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정산검사시 문제없음으로 검토하여 정산처리 하는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 ○○○○○ ○○공사 조경수 하자관리 부적정

[현황]

O 사업현황(표1)

	사 업 량	Ī	공사비(천원)			도급자	비고
<u> </u>	VL E S	계	도급	관급	추진기간		0177
★★★ ○○○○○ ○○공사	건축 319.49㎡(지상1층) 조경공사 12종-233주 그라운드골프, 풋살장	683,430	577,864	100,569	17.09.11 ~ 18.04.10	⊕**** ** (•••)	

【위법 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감사일인 2018. 5. 15.에 위 공사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하자보증기간(2018. 4. 23. ~ 2020. 4. 22.)내에 있는 "★★★ ○○○○○ ○" 내 조경수 4종 14주(왕벚나무 3주, 감나무 1주, 장미 4주, 사철나무 6 주)가 고사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고사된 조경수에 대하여는 즉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서면통지)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수이행 통지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처분내용】

○ 주민복지과장은 고사된 조경수에 대해 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 이행 통지 등 조치를 하시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19,35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현황】

O 사업현황(표1)

 공 사 명			도급액 추진 (천원) 기간	도급자 _	감액금액(원)			비고
		(신권)	기건		당초	변경	정산	
000 00000 000	건축 319.49㎡ (지상1층) 부대시설등	577,864	17.09.11 ~ 18.04.10		12,648,540	12,967,890	319,350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및 지방자치 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 표8]의 기준에 의거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 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 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O 환경보전비로 정산한 항목 중 청소인건비(청소 및 폐기물정리)로 사용된 금액은 비적용대상임에도 정산 없이 319,35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O 주민복지과장은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과다 지급한 환경보전비 319,35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702,78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현황】

O 사업현황(표1)

사업명	사 업 량	보조액 (천원)	추진 기간 도급자			비고		
	71, 2 0		기간		당초	변경	정산	
▲▲▲ ••••• ••\	건축 84.87㎡	110,200	17.05.30 ~ 17.08.14		3,491,130	7,193,910	3,702,780	

【위법 부당사항】

- O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의 지출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하거 나 보조사업 수행에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한 경우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내용】

○ 주민복지과장은 과다 지급한 3,702,78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 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장애인 보장구 지급대상 사후관리 소홀

【현황】

○ 장애인보장구 지급대상자 중 사망자 현황

(단위 : 원)

수급자 성 명	보장구 구입일자	사망일자	보장구 내구연한	보장구 유형명	보장구 기준금액
-	2016-08-24	2018-01-15	5	수동휠체어	480,000
-	2017-06-14	2017-08-02	5	수동휠체어	480,000
-	2014-04-18	2016-07-22	5	수동휠체어	480,000
-	2015-05-11	2016-12-24	6	전동 스쿠터	1,670,000
-	2013-06-19	2016-10-08	6	전동 스쿠터	1,670,000
-	2016-03-10	2017-07-13	5	수동휠체어	480,000
-	2014-10-13	2017-01-03	6	전동 스쿠터	1,670,000

【위법부당사항】

○「의료급여법」제1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2018 의료급여 사업안내」지침체 따르면, 보장기관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등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당해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장애인 보장구 지급 후 내구연한 내에 수급권자가 사망 및 기타 사유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반납 또는 기부 유도 등을 통해시설에 제공하는 등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 주민복지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보장구 지원 후 지급대상 자에 대해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후확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상기 현황 ⑥⑥⑥ 외 6명과 같이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진반납 또는 기부 유도를 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장애인 보장구 사후관리 업무에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 음향기기 교체사업 예산편성 및 물품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편성				예산집행				
사업명	예산 금액	편성목 <i>l</i> 통계목	적정예산 과목 (편성목)	지급일	적요	구입 품목	지출 금액	비고
▲▲▲▲▲ 음향기기 교 체	5,000 (군비)	민 간 자 본이전/ 민 간 자 본 사 업 보조	자 산 취득비	2017.12.27	2017년 ▲▲ ▲▲▲▲ 음 항기기 교체 사업 보조금 지급	스피커 및 음향장비	5,00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자체재원)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명시하고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는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H/W구입비로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산취득은「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요물품정수책정

기준"에 의한 물품구입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주민복지과는 2017년 12월 1일 ▲▲▲▲▲▲▲▲▲▲ 의 보조금교부신 청서를 접수받아 2017년 12월 6일 ▲▲▲▲▲ 음향기기 교체와 관련하여 ▲▲▲▲▲▲(대표자 ○○○)을 보조사업자로 사업기간을 2017년 12월 6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군비 5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 지원하는 2017년 ▲▲▲▲▲▲ 음향기기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2017년 12월 27일 보조사업자 ▲▲▲▲▲▲▲▲▲ 계좌로 보조금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 1월 1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통지를 하였음.
- 그러나 스피커 및 음향장비 등 물품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 자산 취득비로 예산편성을 하여 구매 지원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설사 보조사업 형식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정산을 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아 종국 적으로 영동군 물품관리대장에 누락되는 등 예산편성과 물품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세외수입(장애인전용구역주차 위반과태료) 체납관리 소홀

【현황】

O 과태료 체납자 및 압류 현황

(단위:명,원)

과 목	체납자	생년월일	주 소	상 태	과태료 금액	비고
계	7명				1,447,800	
	_	_	-	압류	139,800	
	_	_	-	압류	142,200	
장애인주차	_	_	-	압류	711,000	
구역위반	_	_	-	압류	136,200	
과태료	_	_	-	체납	112,600	
	_	_	-	체납	103,000	
	_	_	-	체납	103,000	

【위법부당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제4항, 제27조(과태료)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같은 법 시행령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

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100의 20을 감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3항에 다르면 당사자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법」제 32조(독촉과 최고), 제33조(압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복지과에서는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즉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야 함에 도【현황】에서와 같이 ⑥⑥ 외 3명에게 독촉장 발부 절차 없이 압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 외 2명에게 감사일 현재까지도 독촉장 문서고지, 재산조회,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총 7명/1,447,800원의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주민복지과장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지급 16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지급 소홀

【현황】

O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자 착오지급 현황

(단위 : 원)

г									
	О.ПІ	성명	ᄱᄖ의이	년월일 신청일자 책정일자 1월일 신청일자 책정일자	채저이기	:			
	읍·면	66	정단절절 		405V	지급 월	적정 지급액	실제 지급액	· 비고
	_	-	_	2017.2.16	2017.3.23	2017.4	120,000	40,000	80,000원 소급

○ 자격변경(장애수당→장애인연금)대상자 장애수당 미지급 현황

(단위 : 원)

				장애등급 변경일	장애수당 지급내역			
읍·면	성명	생년월일	자격변경		지급 월	적정 지급액	실제 지급액	비고
_	_	_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2017.3.9	2018. 1 2018. 2	80,000	0	80,000원 소급

-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13조(장애인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시기) 및 「장애인연금사업안내」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1, 2급 장애등급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시에는 수급권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에 따라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변동 전 자격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장애인연금사업안내」에 따라 장애수당에서 장애인연금(경증→ 중증으로 장애등급 변경)으로 변경 지급시에는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 한 달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해야 하고(신청필요), 변경 전 까지는 기존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함.
- 그런데도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연금 신규 책정자 ■■■의 장애인연금 최초 지급 시, 신청일 기준으로 연금액을 소급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잘못 상계하여 현황에서와 같이 착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장애등급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변경되어 2018. 3월부터 장애수당에서 장애인 연금 대상자로 지급 변경된 ★★★에게 2018. 1, 2월에 지급해야 할 장애수당 총 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연금 신규 책정자 ■■■과 자격변경 대상자 ★
 ★★에게 각각 80,000원을 소급 지급하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사를 위한 위원회 개최 소홀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이용시설, 교육지원 등)을 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 80%, 군비 20% 보조사업임.
-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긴급지 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에 대해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사후조사를 완료하고(다만,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 1개월이내에 완료하지 않을 수 있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동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함)를 개최하여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적정성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적정성심사대상은 ①최초 실시한 선지원 1개월(의료지원 1회, 교육지원 1회) 지원 건 ②그 외 금전 및 현물지원을 한 모든 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적정성심사 완료 전에 군수가 지원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원연장 결정까지 적정성심사의 대상이 됨)

○ 그런데도 주민복지과에서는 긴급복지대상자 ◎◎◎ 외 84명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